

국제 표준화회의 동향

ITU-T SG 3회의 참가 보고

(스위스 제네바, '93. 11. 1~11. 5)

목 차

1. 서 론
2. 회의 개요
3. 상세 회의내용
4. 향후 회의일정
5. 참가소감

김 윤 열

(주) 데이콤 사업관리부 과장

I. 서 론

본 회의는 지난 11월1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 47개 국가로부터 각 대표자(Delegation) 자격으로 참석한 127명과 각 국제기구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7명등 총 134명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 모여 국제전기 통신서비스의 정산 및 과금원칙(Charging & Accounting Principle)에 관하여 금년 6월 총회에서 합의된 과금 및 정산에 대한 연구과제(Question)를 기초로 각 실무반(Working Party)별로 기존 권고안(CCITT Rec.)의 개정 및 신규작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위 과제(6월 총회 합의과제)의 연구기간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으로 통신서비스의 발전환경과 전세계적인 통신사업추세에 부응하여 과금 및 정산원칙에 관한 국제 권고안(D Series)의 신규 작성 및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합의된 연구과제를 기초로 각 회원국 및 연구소그룹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협의하는 첫번째 회의였다.

연구 제3반(Study Group 3)은 각종 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정산원칙(Tariff & Accounting Principle)에 관한 국제 권고안의 개정/제정을 연구하는 그룹으로 국제통신시장의 경쟁가속화 및 구조변화 등 급격한 사업환경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역할 등에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기간중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정산요율(Accounting Rate) 설정에 관한 문제로 예상되며 92년도에 이미 승인된 기본원칙 즉 원가지향(Cost Oriented)적

인 요율적용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방향의 세부적인 권고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보이며 금번 회의에서도 국제전화서비스 연구작업반(Working Party 4)의 정산요율 권고안 작성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대두되었다.

연구 제3반(Study Group 3)은 5개의 세부작업반(Working Party)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금번 11월 회의에서는 3개의 작업반(3, 4, 5)에 할당된 연구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차기회의는 94년 6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

II. 회의개요

(1) 주제

- 국제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정산원칙(Charging & Accounting in Int'l Telecommunication Services) 국제 권고안 (ITU-T : 구 CCITT) 제정/개정 협의

(2) 개최지

-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 본부(ITU HQ)

(3) 주 관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국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Study Group III)

(4) 기간

○ 1993년 11월 1일(월) ~ 1993년 11월 5일(금) (5일간)

일 시	구 분	주 제
11/1 (월) 09:30~17:30	WP 3/3 Meeting	- Q 3/3 : Data Communication On Public Network - Q 4/3 : Telegram, Teletex, Telemessage, Telex, Facsimile and videotex services - Q 18/3 : Message handling services - Q 19/3 : Public directory services
11/2 (화) 09:30~17:30	WP 5/3 Meeting	-- Maritime mobile services(D.90, D.91) - Aeronautical services - Land mobile services
11/3 (수) 09:30~12:30	WP 5/3 Meeting	-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11/3 (수) 14:30~18:00	WP 4/3 Meeting	- Q 16/3 International videoconference service - Q 6/3 International sound and TV programme Transmissions - Q 5/3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11/4 (목) 09:30~18:00	WP 4/3 Meeting	- Q 5/3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11/5 (금) 09:30~17:30	WP 4/3 Meeting	- Q 5/3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5) 참가국 현황

○ 총 47개국 5기구 : 134 명

국 가 명	인원(명)	국 가 명	인원(명)
독일	7 명	U. A. E	1 명
사우디	3 명	에쿠아도르	3 명
아르헨티나	1 명	스페인	2 명
호주	3 명	폴란드	2 명
바레인	3 명	포르투갈	4 명
벨기에	1 명	시리아	1 명
브라질	1 명	슬로박	2 명
카메룬	1 명	루마니아	2 명
캐나다	3 명	영국	10 명
칠레	2 명	러시아	5 명
콜롬비아	1 명	스웨덴	1 명
한국	1 명	슬로베니아	3 명
덴마크	2 명	미국	9 명

국 가 명	인원(명)	국 가 명	인원(명)
핀란드	1 명	뉴질랜드	1 명
프랑스	8 명	오만	2 명
그리스	1 명	파나마	3 명
헝가리	1 명	네델란드	2 명
인도네시아	2 명	페루	1 명
이란	1 명	태국	3 명
이스라엘	2 명	터키	1 명
이탈리아	5 명	체크	2 명
일본	9 명	국제기구	
쿠웨이트	1 명	AHCIET	1 명
레바논	1 명	CIRM	4 명
말레이시아	2 명	INMARSAT	1 명
노르웨이	2 명	INTUG	1 명
		ITU	2 명
		TOTAL	134명

Ⅲ. 상세 회의내용

□ WP 3 : 비음성서비스 관련 연구과제 회의

- 의장 : MR. D. CASEY(미국)
- 진행 : MR. S. TANAKA(ITU/TSB SECRETARY OF SG3)
MISS J. THILL(ITU)
- 시간 : 11. 1(월) 09:30~17:30
- 진행순서
 - 개회인사
 - 협의의제 선택
 - 제안서 및 기고문 검토
 - Q3/3(공중데이터서비스) 연구과제 협의
 - Q4/3(전보/텔레텍스/팩스/비디오텍스) 연구과제 협의
 - Q18/3(MHS) 연구과제 협의
 - Q19/3(PUBLIC DIRECTORY SVC.) 연구과제 협의
 - 타 연구반(SG) 소식
 - 회의종료

[회의진행 공지사항]

의장 Mr. Casey(미국)의 개회인사와 더불어 제 3연구반 사무국장인 MR TANAKA의 TSB의 조직과 규칙에 관한 설명과 함께 각 회원국의 규칙준수를 당부함

첫째, SG3에 운영중인 작업반(WP)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93년 3월 헬싱키 합의) 각 작업반의 명칭은 WP(WP명)/(SG명)으로 표시하되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예 : WP 4/3은 SG3의 WP4를 의미함)

둘째, 권고안의 명칭은 CCITT 권고안에서 ITU-T 권고안으로 변경한다

셋째, 각 기고문(CONTRIBUTION)은 회의

개시 2개월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E-MAIL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SG3가 타 SG에 비하여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회의 참가시에도 등록신청서(Registration Form)를 정확히 기재하여 기한내 등록하여 TSB측에서 충실한 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이번 11월 회의에서도 1개월전에 등록신청하도록 공지되었으나 9월말에는 수십명에 불과하던 참가요청자가 10월중순과 10월말로 계속 늘어나 회의 바로 전날 갑자기 140여명으로 늘어나 자료준비 등 제반 회의준비에 TSB요원들의 많은 애로가 있었음이 지적되었음)

[각 의제별 협의 내용]

할당된 각 연구과제(Question)별로 제안취지 및 내용을 설명/협의하고 타 연구반의 요청/질의사항에 관한 검토등 비교적 여러부문(공중데이터망서비스/MHS 등)에 걸쳐 다양한 협의가 있었으며 특별히 문제화된 이슈는 없었다

(1) QUESTION 18/3(MHS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연구과제)에 관한 SG I 의견 검토

○ SG I 은 권고안 F.400 Series(복합국가간 ADMD)의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중 SGⅢ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함

(2) QUESTION 18/3(MHS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연구과제)에 관한 SG7 의견 검토

○ MHS Settlement Log에 관하여는

MHS Management 권고안 별첨B 초안을 참고로 하도록 제안하고 별첨B 및 실제구성요소 정의는 94년 후반에 완성될 예정으로 연구과제 14/7로 선정하여 SG7에서 연구중에 있음을 확인

(3) QUESTION 3/3(공중망 데이터통신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연구과제)에 관한 SG7 의견 검토

○ Multicast Data Service제공에 관한 SG3의 검토사항

- 이번 연구기간 동안 패킷공중망의 Multicast Data Service 제공을 위한 절차 및 표준안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X.6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과제 Q5/7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음
- 따라서 X.6에 대한 과금 및 정산원칙에 관한 SG3의 의견이 필요하며 94년 1월 이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94. 2. 11~18 회의 예정)

○ X.742(사용량 측정기능) 적용에 따른 과금 및 정산에 관련된 사항을 SG3에서 검토 연구하기로 함

(4) QUESTION 19/3(공중 디렉토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과제)에 관한 SG1 의견 검토

○ 세계 통신산업의 개방화/자유화/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고객 단말기 또는 교환원에 의해 타국가 디렉토리 제공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상호간의 정산료 지불원칙에 관한 설정이 요구됨(참고 : 권고안 E.115)

○ 정상적인 정산절차 확립과 정산 과정상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SG3에서 연구하기로 함.

(5) QUESTION 18/3(MHS에 관한 연구과제)

에 대한 TSB 제안검토

○ ITU-T D 권고안 초안(Text)

5.2 일반원칙

5.2.1 정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ADMD간 협의되지 아니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발신측은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2.2 서로 협의되지 않은 특정 발신 트래픽에 대해서 착신측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2.3 최종수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신측에 도달한 트래픽은 정산 대상에 포함한다

5.2.4 ADMD 간 상호접속서비스는 트래픽 방향에 따라 각기 지불비율을 설정한다

5.2.5 ADMD 간 상호접속서비스의 지불비율 설정에 있어서 각각의 비율요소는 동일할 필요는 없다

5.2.6 일반적으로 정산절차는 발신 ADMD가 정산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5.2.7 특별한 협정이 없는한 요율은 SDR로 표기한다

5.2.8 이 권고안에 규정하는 것이라도 상호 특별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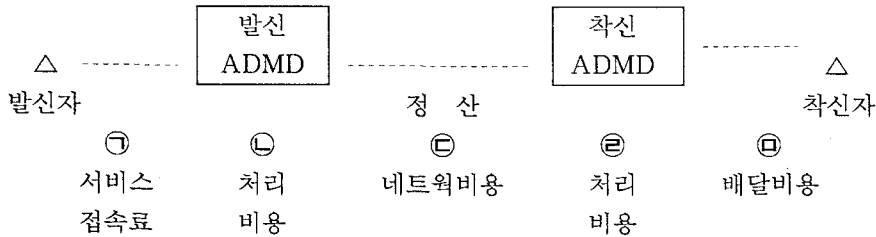
5.2.9 일반적으로 발신 ADMD에서 정산서 작성과 자료작성의 책임이 있다

5.2.10 배달 메시지에 대해 두가지의 정산방식이 있다(예측정산정보기준/정확한 정산정보기준)

5.2.11 역과금 MHS서비스에 있어서 정산서 작성과 자료작성의 책임은 수신 ADMD에 있다

5.2.12 각 국가 ADMD간 비용요소 설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5.3 각 비용별 정산대상



5.3.1 발신자 과금의 경우 정산대상 비용요소

$$\text{㉡} + \text{㉢} + \text{㉤}$$

5.3.2 착신자 과금의 경우 정산대상 비용요소

$$\text{㉠} + \text{㉡} + \text{㉢}$$

□ WP 5 : 이동체서비스 관련 연구과제 회의

- 의장 : MR. M. W. Lucas(영국, British Telecom)
- 진행 : MR. S. TANAKA(ITU/TSB SECRETARY OF SG3)
MISS J. THILL(ITU)
- 시간 : 11. 2(화) 09:30 ~11. 3(수) 12:30
- 진행순서
 - 개최인사
 - 협의의제 선택
 - 제출서류 검토
 - 해상이동통신서비스(권고안 D.90/D.91)관련 연구과제 협의
 - 항공통신서비스에 관한 연구과제 협의
 - 육상이동통신서비스(권고안 D.93)에 관한 연구과제 협의
 - UPT(개인통신서비스) WP활동 검토
 - 기타 사항
 - 회의종료

영국의 Mr. Lucas 의장의 인사와 그간 각 회원국 및 Expert 그룹의 연구노력에 대하여 치하하고 지난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TELECLOBE 주최로 개최되었던 D.90 권고안 초안 작성에 관한 회의결과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는 캐나다에서 Expert 그룹이 연구한 초안을 기초로 협의하고 추후 이 협의를 토대로 94년2월 벨기에에서 BELGACOM 주최로 Expert 그룹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Expert 그룹이 제시한 D.90 초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다

(D.90) 해상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정산원칙

A. 정의

- A.1 정산주체(Accounting Authority)
- A.2 정산주체 인식코드(Accounting Authority ID Code)
- A.3 Maritime Account
- A.4 Landline charge(육상 네트워크사용료로 정의함)
- A.5 Landstation Charge(육상기지국 설비 사용료로 정의함)
- A.6 Mobil Station Charge(해상기지국 설비

[각 의제별 협의 내용]

(1) 권고안 D.90에 관한 연구과제 협의

사용료로 정의함)

B. 일반원칙

- 해상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정산을 두가지로 구분함
 - Maritime Billing
 - Maritime International Accounting
- 정산목적에 의해 착신부담통화는 착신국에서 발신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C. 과금원칙 (Charging Principle)

- 기본적으로 과금구조 및 수준은 국내문제로 위임하기로 함
- 사용요금은 ITU에 주기적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화폐단위는 IMF통화단위 즉 SDR, GF 이어야 함(변환율 : 3.061)
- 요금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5가지로 분류하여 지적함
 - 국내접속료, 국제접속료, 육상기지국 사용료, Segment사용료, 기타

C. 빌링 및 정산

- 원칙적으로 빌링은 국가의 제도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고지주체는 주관청, 운영기관, 정산책임이 있는 제3기관, 신용카드사, 재판매업자, 기타 주관청으로 부터 지정된 기관 등이 될수 있다
- 빌링의 시간일정 (Time Scale)에 관하여는 부록 D에서 설명함
- 빌링절차
 - 빌링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는 기지국 식별 혹은 Call Sign, 정산기관 코드, 크레디트카드 정보, 국가 및 지역번호 등 주소정보, 과금단위, 통화시작과 종료시작, 통화구분,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고지서의 작성 및 발송 등 제반 절차는 ITU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D. 국제 정산(International Accounting)

- 원칙적으로 ITU-T 권고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산되어야 함

- 발신 주관청이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육상회선사용료 및 CES/LES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정산요율을 설정할 수 있다
- D.90 별첨 초안 검토
 - Annex A : 정산주체 식별번호
 - Annex B : 약어설명
 - Annex C : 고지서 작성예
 - Annex D : 고지서 양식예
 - Annex E : 빌링 시간일정표(Time Scale)

위의 초안 협의에 기초하여 중국/영국이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고 아울러 시간 일정표(Time Scale)에 관한 캐나다/일본의 제안사항을 검토한후 작업반(WP)의 공식 검토의견을 제시하기로 함(Delayed Document DT 507 참조)

권고안 D.91 초안에 대해서는 93년6월 독일(DBT)에서 제안한 내용에 관한 설명과 함께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등 각 회원국의 검토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D.91에 따른 부호화된 트래픽정보 교환절차의 확립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 QUESTION 17/3(UPT 과금 및 정산원칙) 연구과제 협의(NEW RECOMMENDATION)

92년 9월(20~2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협의된(TELECLOBE주관, 보고자그룹의 MR, ROBERT MADDEN 진행, 9개국 18명) 개인통신망에서의 정산 및 과금원칙에 관한 회의에서 일본 KDD, 보고자그룹, 이탈리아 ITALCABLE 제안을 기초로 권고안 D.UPT(초안)가 작성되었으며 급변회의에서는 이를 기초로 협의함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 SG2의 연구과제 6/2 적용에 관하여 E.174에 규정된 UPT ROUTING을 중심으로 94년 2월28일 이전에 SG3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 SG1의 연구과제 17/3에 따라 93년 10월 브라질에서 협의된 UPT의 특정 및 부가서비스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SG3의 연구에 참고하기로 함
- 연구과제 8/1의 보고자 그룹회의(93. 8, 더블린)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SG3의 연구에 참고하기로 함

□ WP 4 : 국제전화서비스 관련 연구과제 회의

- 의장 : MR. J. F. H PAYMANS(네덜란드, ROYAL PTT NEDERLAND)
- 진행 : MR. S. TANAKA (ITU/TSB SECRETARY OF SG3)
MISS J. THILL (ITU)
- 시간 : 11. 3(수) 14:30
~11. 5(금) 17:30
- 진행순서
 - 개회인사
 - 협의의제 선택
 - Q16/3(국제영상회의서비스) 연구과제 협의
 - Q6/3(음성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전송서비스)연구과제 협의
 - Q5/3(국제전화서비스) 연구과제 협의
 - 권고안 D.140의 annex a 연구완결
 - 권고안 D.140의 annex b 개정검토
 - 권고안 D.140의 annex c 연구
 - 기타 D 권고안 개정
 - 향후 작업일정 및 회의계획
 - 기타사항
 - 회의종료

의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6월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금번 회의에서 많은 연구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여러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WP4/3의 핵심연구과제는 정산요율에 관한 D.140 annex의 마련에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를 요청하였음

또한 TSB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앞으로 부록의 표시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도록 통일하였음(annex a, b, c)

각 지역별 요금연구 그룹의 의장단을 제공표하였으며 아시아지역은 뉴질랜드의 MR, P, WATT가 의장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금번회의 협의안건에 관하여 Q 16/3, Q 6/3, Q 5/3이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연구과제 5/3 즉 정산요율에 관한 사항을 먼저 논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연구과제 16/3, 6/3에 대한 검토요청과 제안요청이 있었으나 별로 많은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였다

(1) 권고안 D.140-ANNEX A에 관한 협의

(a) ANNEX A 제목설정

- 요율배분(SHARES)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음
- “국제전화 정산요율과 요율배분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원가요소 설정 기본가이드”

(b) 의장의 제안내용(권고안 초안) 검토

- 원칙적으로 부록은 권고안 본문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권고안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논의되도록 하고 기고문(Contribution)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취지의 설명이 포함되도록 협조를 당부함
- 93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WP4/3 긴급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금번 협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함(부록 a의 Title과 Introduction 초안중 SEC.1 초안은 합의되고 SEC.2와 SEC.3은 추가 연구대상임)

1. 네트워크 구성요소

1.1 국제전송설비

1.2 국제교환설비

1.3 국내망(문구 약간 수정)

2. 관련원가

2.1 직접원가

- 자본비용(감가상각비, 이자비용, 투자보수율)
- 운영유지비
- 임차 및 리스비용
- 중계비용
- 국내망 접속료
- 직접 연구개발비

2.2 간접 혹은 일반원가

- 타서비스와 혼합되어 있으므로 각각 배분되어야 할 경우가 많음
- 일반관리비(본사비용, 관리비, 교육비 등)
- 관리시스템(정산시스템 등)
- 기타 연구개발비
- 적정 세금

3. 기타 비용

- 상호협약(Bilateral Agreement)에 의하여 합의된 비용요소

(c) 미국의 제안내용 검토

- 미국은 국제전화서비스 네트워크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원가의 규명에 초점을 두고 권고안 부록 A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원가산정방법(직접, 간접, 일반원가)은 부록 C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가요소(Cost Element) 구분
 - 네트워크 요소
 - 국제전송설비(해저케이블/위성전

송로/지상전송설비)

- 국제교환설비(교환센터 및 관련전송장비)
- 국내망(로컬교환기/전송설비/local loop)

- 관련원가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구분의 실익이 없고 이는 방법상의 문제이므로 부록 C에서 논의하는 것이로응다는 중론에 따라 미국은 직접/간접 구분없이 다음과 같이 관련원가요소를 수정 제시함
- 자본비용(감가상각비 포함)
- 운영유지비용
- 통신설비의 임차 및 리스비용(Transit비용과 혼동의 여지가 있음이 지적)
- 중계비용(해당되는 경우)
- 국내망 접속료(단 해당되는 경우)
- 연구개발비
- 일반관리비(본사경비, 관리비, 교육비, 관리시스템 등)
- 세금(혹은 유사경비)
- 기타 상호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비용

※ 어떤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국제전화외의 타 서비스에도 사용될 수가 있으며 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원가배분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는 부록 C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의 제안은 각 회원국의 반대의견과 번역상의 문제, 제출기일 문제 등으로 인해 금번 회의에서 수락되지 못하였으며 미국측은 다시 검토한후 94년6월 회의에 다시 작성 제출하기로 함

(d) 의장제안에 대한 캐나다 의견

- 의장이 제안한 내용을 지지하며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을 코멘트함

(e) 의장제안에 대한 호주의 제안 검토

- 권고안 D.140에서는 효율배분(A/R Share)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부록 A의 정의에서도 배분에 관한 사항이 없음을 지적
- 부록 A 초안에 관한 문제점 지적
 - 직접/간접원가가 정의되지 않았음
 -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원가는 여러서비스의 복합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요소별 비용 측정과 성격 규명, 계산 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정의되지 않고 있음
- 제안 요점
 - 효율배분(A/R Share)에 관한 언급은 Annex A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Annex C에 포함시켜야 함
 - 부록 C에서 “효율배분”이라는 토픽으로 관련 권고안(예 D.155)을 참고로 설명되어야 함
 - D.140에 정의된 부록의 의미를 검토해 볼 때 산정방법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부록 A에서 설명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부록 A에서는 네트워크 요소와 관련된 비용요소의 정의에 국한할 것을 제안함 따라서 산정방법(Costing Methodology)과 관련된 사항은 부록 C에서 설명할 것을 제안함

(f) 칠레의 제안 검토

- AHCJET, COMTELCA, ASETA(남미 연합체)등에 속한 19개국가 42명의 대표들간에 합의된 사항을 설명함
- 주안점
 - 통신망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촉진이라는 ITU의 기본목표와 현재의 높은 중계요금으로 인한 직회선 설정필요에 의한 효율성 왜곡이라는 현실을 감

한해 볼 때 중계요금과 정산요금 및 효율배분등은 필수적으로 원가에 기초해야 한다

-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미흡한 경쟁상황을 감안해볼 때 아직 중계요금은 원가에 기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안

- 부록 a의 Introduction은 의장이 제안한 초안에 중계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함 즉 원가지향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중계요금의 설정과 개정에 있어서도 정산요금과 동일한 원가요소가 감안되어야 한다.

(g) 권고안 D.150에 관한 칠레 제안

- 정산요금과 중계요금 및 효율배분에 관한 원가지향적인 D.140 마련과 더불어 D.150의 일부 개정필요성을 주장함
- 특히 중계요금이 원가이상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정산요금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권고안에 표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

(h) 권고안 D.155에 관한 칠레 제안

- 정산요금과 중계요금 및 효율배분에 관한 원가지향적인 D.140 마련과 더불어 D.150의 일부 개정필요성을 주장함 즉 중계요금을 공제한 이후의 정산요금 배분에 관하여 권고안 2.2 초안을 제시함

(i) 권고안 D.140에 관한 노르웨이 제안

- ITR규정에 따라 D시리즈에 명기된 교환원서비스에 관하여도 통신설비의 원가에 기준하여 수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오디오텍스 서비스와 같이 착신 교환원에 의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교환원의 역할이 수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것에 비해 정산율의 배분구조는 서비스정의에 역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D.140은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

즉 국제전화사용에 대한 대가 보상의 개념은 그 제공된 설비의 원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k) 권고안 부록 a 작성에 대한 의장의 결론

- 모든 회원국의 질문과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급변 협의내용에 근거하여 전문가그룹(Small Expert Group)이 검토한후 초안을 다시 마련하여 94년 6월 회의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의장이 제안한 Contribution 16중 이견이 많았던 직접원가(Direct Cost) 부분은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의 긴급 협의에 바탕하여 초안을 수정 작성하여 원가요소의 기본사항으로 함(Doc. 404 참조)

(2) 권고안 D.140-ANNEX C에 관한 협의

(a) 아르헨티나의 제안 검토

- 원가에 기초한 정산요율설정과 배분 협상에 관한 기본가이드에 관한 것임
- 주요 고려사항
 - 권고안 D.155에 의하면 사업자간 서비스의 정산요율 배분은 서로 어떤 일정비율에 의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고안 D.140은 비록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루트에서 그 구성요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 국가의 발전 정도와 환경등에 따라 그 원가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요율배분도 각 국가 및 여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발전도상국에서는 다양한 통화량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발전단계, 무역활동, 구매력, 인구, 전화보급율등의 여러 차이로 인해 정산후자인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정산요율은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요율배분은 각각의 원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급격히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통신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전반적인 통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적정한 통신망 설비의 구축은 경제 및 사회전반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정부의 투자활동과 통신망 운영 수준의 향상과 건설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며, 이는 ITU의 중요한 목표인 통신서비스 발전과 운용 촉진 및 설비 발전등과 부합하는 것임을 주장

○ 제안

- 각각의 국가 사정에 기초하여 정산요율과 요율배분이 함께 고려/협의 되어야 한다
- 요율협상에 있어서 제시되는 원가정보는 해당사업자의 강점과 약점, 전략목표등 제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필히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상호간 교환권 원가정보는 공시된 정보(Annual Report)에 기준한다
- 협상에 있어서 각 주관청은 국제전화의 평균원가를 각각 산정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두 사업자의 총 평균비용을 산정하여 협상할 수도 있다
- 요율 및 배분은 두 주관청의 합리적인 투자보수율도 감안해야 한다

(b) 칠레의 제안 설명

- 남미 42명의 대표에 의해 합의된 부록 C 초안을 설명

- 주요 고려사항
 - 각 서비스 원가는 직접원가에 간접 및 조직/재무비용중 일정부분이 추가되어 산정될 것이며 일단 상호협상을 위해 결정된 비용요소는 정산요율/요율배분/중계요율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제안
 - 두 사업자간에 협의된 정산요율의 수준은 1분당 두사업자의 총원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 요율배분은 총 정산료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각 사업자별 1분당 원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 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1분당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중계요금율 설정하여야 한다

(c) 볼리비아 제안

- 볼리비아의 제안은 회원대표의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차기회의시 재상정할 예정이며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칠레의 제안과 비슷하였다
- 정산요율/요율배분/중계요율 설정에 있어 각 국가별 원가수준이 각각 달리 고려되어야 하며 1990년 ITU 연구자료(선진국간 통신서비스 원가의 연구)에 의하면 후진국의 국제전화 분당 원가는 2.08 SDR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였음

(3) 권고안 D.140-ANNEX B에 관한 협의

(a) 칠레의 제안설명

- 남미 19개국(AHCIET, COMTELCA, ASETA) 42명의 대표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설명함
- 권고안 부록 B의 작성 목적은 전세계적

인 정산요율의 패턴 제시에 관한 것이며 이를 위해 별첨1과 별첨2를 마련하였으며 93년 4월 TSB에서 요약 보고한 질문서와 같이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

- 따라서 별첨1, 2는 계속 유지 연구되어야 함

(b) IDD 정산요율 조사에 관한 영국의 설명

- 최초 연구결과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산요율은 D.140의 기본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즉, 인하되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됨
- 매년 변동 추세연구는 WP4/3의 중요한 역할로 판단되며 따라서 설문서 작성방법과 조사연구방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주장함
- 추가적인 질문서를 제시하고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양식에 따라 92년 12월31일 이전까지 TSB로 제출하기로 함(TSB CIRCULAR 23 참조)
- 요금변화를 작성방법에 있어서 일부 국가들의 이견 즉 트래픽양에 의한 가중치를 무시하고 단순 국가별 산정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됨

IV. 향후 회의 일정

(1) WP별 94년도 회의계획

① 5/31 ~ 6/9, 1994

	오 전	오 후
5.31(화)	WP3/3	WP3/3
6. 1(수)	WP3/3	WP1/3+WP5/3
6. 2(목)	WP1/3+WP5/3	WP1/3+WP5/3
6. 3(금)	WP4/3	WP4/3
6. 6(월)	WP4/3	WP4/3
6. 7(화)	WP4/3	WP2/3
6. 8(수)	WP2/3	WP2/3
6. 9(목)	PLENARY	PLENARY

② 12/12 ~ 12/15, 1994

	오 전	오 후
12.12(화)	WP5/3	WP5/3
12.13(수)	WP4/3	WP4/3
12.14(목)	WP4/3	PLENARY
12.15(금)	PLENARY	PLENARY

(2) 94년도 MEETING 계획

구 분	기 간	장 소	주 제
W/P 4/3 Rapporteur Group	94. 2. 21(월) ~2. 25(금)	시드니 호주	과제 20/3(IN) 과제 22/3(GVPN)
W/P 5/3 Expert Group	94. 2. 28(월) ~3. 2(수) 94. 3. 2(수) ~3. 4(금)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과제 7/3(권고안 D.90) 과제 UPT(D. UPT)
W/P 2/3 Expert Group	94. 3. 7(월) ~3. 9(수)	런던 영국	과제 8/3 ~ 과제 11/3(ISDN)

V. 참가소감

최근 국제전화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 정산요율(Accounting Rate)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각 사업자의 이해득실 뿐 아니라 국가이익 차원에서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어 주로 WP4의 정산요율 연구과제에 가장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다

연구3반의 활동영역은 국내의 요금설정에 관한 것으로 이번 연구회기(93년~96년) 동안에는 최대 문제는 역시 국제정산요율 수준에 관한 합의로 보였다. 따라서 대부분 주요국가의 요금 및 정산요율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의견개진도 많아 결국 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비록 권고안이라는 하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기준으로서 각 사업자간 정산요율 협의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규정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미국과 남미, 유럽, 일본등은 이 분야의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도 본 연구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깊이 연구하여 타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체계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도 국내연구반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하여 국내 연구반의 연구성과가 한국의 통신사업 발전과 이익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국내 창구인 통신기술협회 등을 통하여 회의의 성격과 국가 대응전략에 맞게 각 사업자 및 기관별로 사전준비등을 거친후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는 준비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정산요율에 관한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

되면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회기 말인 96년 이전에 합의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이번 회의의 분위기로 보아 결국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국간의 상호협의를 조정해 위임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자의 정산요금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문제들에 관해 협의하는 장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 회의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도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세계추세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